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

[시행 2024.01.01] (전부개정) 2023.12.21 조례 제2014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55-831-2660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우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장수노인"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장수축하물품"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축하기념품을 말한다.
- 3. "장제비"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.

- ② 장제비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되,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최대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2.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
제4조(지원내용)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만 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으로 한다.

② 장제비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 원 이내로 한다.

제5조(지원방법 등) ① 장수축하물품 신청은 장수노인이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(이하 "읍·면·동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②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·면·동장을 경유한 후 사천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급절차) ① 읍·면·동장은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 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읍·면·동장으로 하여금 장수 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.
- ③ 장제비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지급대상자 금융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제외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·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
- 2.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

제8조(화수조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.

- 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
- 2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제9조(대장관리)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·관리해야 한다. 다만,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 할 수있다.

부 칙<조례 제1642호 2019.12.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조례 제1966호, 2023.9.2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조례 제2014호, 2023.12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수축하물품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100세가 경과한 노인부터 적용한다.